

12월말 결산법인 2002년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제공 : 국세청 납세홍보과

신고대상 법인

- 사업연도가 2001.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신고기한 : 2002년 4월 1일

-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이나, 금년은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날까지 연장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법인이 경비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금년에 신고하는 2001. 12월말 법인부터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의 2%로 인하

접대비는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만 인정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가 아닌 다른 가맹점(위장가맹점 등)명의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손비 처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판정기준 범위 확대

종전에는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중 하나라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주요 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수취·보관하지 않은 경우 - 미수취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 적용 (8%P 인하)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주요 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직전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 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직전 2년」으로 확대

단, 다음 하나의 기준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종업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 매출액 1,000억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이므로 일정한 비율만큼 과세하지 아니함.

출자대상 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상장·등록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 가산세 폐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외부감사대상)법인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불이행시는 법인세 산출 세액의 1%와 수입금액의 0.004%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
따라서, 금번 신고대상인 12월말법인은 이번 신고시부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으며 무공고시에도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됨.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합병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무조정사항은 대부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신고부터 승계가 가능한 세무조정사항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 유가증권 평가손익,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 현재 가치할인차금,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보증충당금.